

『肅宗實錄儀軌』의 本廳文書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fficial Documents of Registered in *Sukjong Sillok Uigwe*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1. 緒言	3.1 均字匠
2. 文書謄錄의 形式	3.2 白土
2.1 移文	3.3 松烟墨
2.2 來關	4. 結語
2.3 甘結	<참고문헌>
3. 活字印刷記錄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숙종실록의궤』에 등록된 본청 문서의 분석을 통해 문서등록의 형식과 정확성, 그리고 활자인쇄에 관한 주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궤 작성 시 문서원본의 부재나 훼손으로 원문, 또는 낱씨의 기입이 누락된 것과 작성자의 오류로 인해 오자나 등록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둘째, 내관의 등록은 해당 관아가 실록청의 주문에 호응하지 못한 문건에 한정하고, 후일의 증빙으로 삼기 위해 그 원문에 堂上의 제사를 병기하였다. 셋째, 감결은 계와 전에 발급한 것이 없고, 관아가 아닌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인출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균자장의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동일하였다. 다섯째, 주자에 필요한 백토는 경기도 금천현 청회에서 나는 것이 진배되었다. 여섯째, 인출에 필요한 묵은 새로 만든 품질이 좋은 송연묵이 수차례 진배되었다.

要語: 숙종실록, 의궤, 균자장, 백토, 송연묵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2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format and accuracy, including the main facts about type-printing, through analysing the records registered in *Sukjong Sillok Uigwe*.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established as follow; First, when writing the uigwe, there were lots of omission of the original records and date, because of absence and damages in original records. Second, the registration of naegwan was restricted for documents that the offices couldn't accept according to the orders of Sillokcheong. Third, gamgyeol was not sent to private organization like kye and jeon. Forth, a number of kyunjajang who influenced to the period of printing were mobilized from the country. Fifth, baekto which were necessary for making letters were presented from Cheonghoe. Sixth, the ink that needed for printing were supplied with songyeonmuk of high quality.

Key words: sukjong sillok, uigwe, kyunjajang, baekto, songyeonmuk

1. 緒 言

「肅宗實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의 肅宗 재위기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의 편찬은 1720년 11월에 시작하여 1728년 3월에 끝이 났는데, 그 찬수과정을 기록한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이하 「肅宗實錄儀軌」)는 당시 왕래되었던 문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그것을 통해 문서등록의 특징은 물론, 나아가 인쇄술에 관한 당시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實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아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를 옮겨야 하고, 특별히 그것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肅宗實錄儀軌」의 문건을 살펴보면, 櫃子 안에 蠹虫이 발생해 수리하고, 川芎과 菖蒲末 등을 넣은 사실, 그리고 時政記와 日記를 봉안한 방에 濕氣가 많아서 點火차 溫突木 1丹을 3일 간격으로 진배토록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記錄保存史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¹⁾

實錄儀軌의 문서등록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純宗大王實錄儀軌」(이하 「純宗實錄儀軌」)와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이하 「哲宗實錄儀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힌 바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문서등록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식과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肅宗實錄」은 肅宗의 재위기간이 오래여서 記事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老論과 少論의 분쟁 와중에 편찬자 대부분이 교체된 까닭에 그 어느 때보다도 편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³⁾ 儀軌를 편찬할 당시 근거자료인 문서의 보관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문서등록상의 오류 또한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이다.

實錄은 역대로 活字로써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實錄儀軌는 活字印刷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肅宗實錄儀軌」에는 특별히 均字匠의 동원과 活字의

1)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壬寅 5월 5일 戶曹 등 참조.

2) 김상호,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9집(2011. 9), 335-357.; 김상호, “純宗大王實錄儀軌 謄錄 官文書의 研究,” 『書誌學研究』 50집(2011. 12), 231-248.

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2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1982), 105.

鑄造에 필요한 白土, 그리고 인출에 필요한 墨의 진배에 관한 사실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해당 요소가 최근 서지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그에 덧붙이고자 한다.

2. 文書謄錄의 形式

1731년에 작성된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관문서는 모두 744건으로 實錄廳의 本廳과 一房, 二房, 三房, 粉板, 謄錄廳, 그리고 別工作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다. 그 중 本廳의 문건은 移文이 152건, 來關이 48건, 甘結이 330건이며, 모두 530건으로 전체 744건의 7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1 移文

本廳이 28개 관아에 보낸 移文 152건은 그것이 복수의 관아에 발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연 254건에 달하는 양이다. 이를 관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관아별 移文 연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戶曹	116	兵曹	88	慶尙監營	6	全羅監營	4	備局	4
刑曹	3	司憲府	3	宗親府	3	忠淸監營	3	漢城府	2
禁衛營	2	校書館	2	江原監營	2	京畿監營	2	吏曹	1
忠勤府	1	禮曹	1	咸慶監營	1	平安監營	1	黃海監營	1
訓練都監	1	御營廳	1	左捕盜廳	1	右捕盜廳	1	左巡廳	1
右巡廳	1	竹山府	1	南平縣	1	계		254	

위 표에서와 같이 移文은 戶曹와 兵曹에 발급된 것이 204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26개 관아에 발급된 것은 단지 50건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戶曹와 兵曹의 문건은 동원 인원의 料布와 點心米의 지급 등 월례적인 것이 많다. 이와 같은 문건은 당연히 매 일자에 맞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 전 달의 移文 末尾에 細註로 ‘某月朔料布移文上同’ 등과 같이 기입된 예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⁴⁾ 이는 儀軌 작성 시점에서 문서원본이 부재한 까닭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甲辰 3월에 戶曹와 兵曹에 보낸 移文 중에는 ‘自四月七月至點心米及料布移文事上同’이라 하여 7월까지의 것이 한꺼번에 기입된 예도 있다.

丁未 3월 16일에 宗親府로 보낸 2건의 移文 중 1건은 원문이 한 글자도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실수로 중복 기입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참고로 같은 해 3월 21일에 작성한 本廳의 甘結에는 수취관아가 없이 ‘右甘結今此實錄印出時’까지만 적혀 있는데, 분실되거나 훼손된 문서로 인해 儀軌 작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儀軌에 등록된 移文 중에 일자가 누락된 문건이 간간이 발견된다. 대개는 앞의 것과 같은 일자의 문건이라면 ‘同日’로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의 문건과 동일한 날짜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날짜순 기입이 틀리게 등록된 문건이 없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戊申 正月 어느 날 戶曹에 보낸 문건은 司宰監에서 올린 牒문을 인용하여 적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溫突木의 진배를 이전과 같이 시행하도록 司宰監에 분부할 것을 戶曹에 주문한 내용인데, 본문 중에 ‘每日’을 ‘每白’으로 誤記한 것이 있다.各司에서 올라온 많은 문서들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⁵⁾

2.2 來關

本廳에 등록된 關은 모두 48건이며, 11개 관아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이를

4)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甲辰 정월 일 戶曹. 甲辰 3월 일 戶曹, 兵曹 등 참조.

5)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戊申 정월 일 戶曹 참조.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관아별 來關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戶曹	25	繕工監	6	刑曹	4	長興庫	3
兵曹	2	義盈庫	2	京畿監營	2	吏曹	1
工曹	1	軍資監	1	司圃寺	1	계	48

위 표에서와 같이 來關은 戶曹가 25건, 繕工監이 6건, 刑曹가 4건의 순으로 많다. 移文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戶曹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來關은 특별히 해당 관아가 實錄廳의 주문에 호응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문건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 예로 辛丑 5월 어느 날 工曹에서 온 來關은 本廳이 같은 달 9일에 보낸 2건의 甘結 중 하나에 대한 회신인데, 그 요지는 本廳이 요구한 물종의 진배가 어렵다는 것이다.⁶⁾ 또 戊申 3월 어느 날 繕工監에서 온 來關 역시 진배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진배할 腰彩輦은 수리 중이고, 나머지는 오래 버리다시피 해서 낡아 쓸 수 없다는 내용이다.⁷⁾

그리고 書吏 9인의 點心米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壬寅 3월 14일자 戶曹의 來關을 보면 6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산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는 본시 移文으로 書吏에게 줄 點心米를 3월부터 예에 따라 지급하라는 本廳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堂上의 題辭는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⁸⁾

한편 등록된 來關 중에는 壬寅 6월의 문건이 乙巳 3월과 4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다. 해당 문건은 종이의 진배에 관한 건으로 앞 뒤 문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干支와 月次를 한꺼번에 誤記하기는 어려운 만큼 누락된 문건을 뒤늦게

6)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辛丑 5월 일 工曹. 甘結秩 辛丑 5월 초9일 참조.

7)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戊申 3월 일 繕工監. 甘結秩 戊申 3월 18일 참조.

8)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壬寅 3월 14일 戶曹. 移文秩 壬寅 2월 일 戶曹 참조.

등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來關은 하나같이 원문 아래에 堂上의 題辭를 기입해놓고 있다. 이는 「純祖實錄儀軌」나 「哲宗實錄儀軌」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純祖實錄儀軌」와 「哲宗實錄儀軌」의 來關은 주로 중요한 물품의 진배나 인원의 동원에 관한 내용인 반면, 「肅宗實錄儀軌」에서 그것은 해당 관아 간에 순조롭지 못한 일을 주로 다루고 있다. 堂上의 題辭가 병기된 이유가 후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來關과 그에 딸린 題辭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당시 實錄廳과 戶曹 간에 왕래된 문건들은 각각의 物種을 실질적으로 진배하는各司의 사정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丙午 2월 3일 義盈庫에서 올린 牒報는 원래 實錄廳이 요구한 것을 戶曹에 보고한 결과 物種의 등급을 낮추도록 處分을 받았다는 내용이고,⁹⁾ 같은 달 長興庫에서 올린 牒報 또한 實錄廳이 요구한 것을 會減차 戶曹에 보고했다가 거부된 사실을 밝힌 것이다.¹⁰⁾ 같은 해 6월에 繕工監에서 올린 牒報는 實錄廳이 요구한 물품에 대한 진배의 어려움을 戶曹에 보고하고 받은 戶曹의 處分을 수록하고 있다.¹¹⁾

사정이 그러하여 戶曹의 來關에는各司의 牒모에 근거하여 작성한 문건도 몇 건이 된다. 辛丑 윤6월의 來關은 禮賓寺의 牒모을,¹²⁾ 그리고 丁未 3월 어느 날의 來關은 司宰監의 牒모을 기초로 하였다.¹³⁾ 이러한 戶曹의 來關은 소속 관아의 어려움을 대신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各司에서 온 來關에 대한 實錄廳 堂上의 題辭는 대체로 해당 관아의 사정을 수용하고 戶曹에 捧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題辭로 간단한 것은 ‘依’, ‘到付’, ‘依所報施行’ 등 몇 자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은 處分이 필요한 일이어서 비교적 長文으로 기입이 되고 있다.

9)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丙午 2월 3일 義盈庫 牒報 참조.
 10)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丙午 2월 16일 長興庫 牒報 참조.
 11)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丙午 6월 일 繕工監 牒報 참조.
 12)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辛丑 윤6월 일 戶曹 참조.
 13)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丁未 3월 일 戶曹 참조.

2.3 甘結

本廳에서 각 관아에 발급한 甘結은 모두 330건이다. 복수의 관아에 발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연건수는 모두 1,180건에 달한다. 관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관아별 甘結 연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관아	건수
戶曹	279	繕工監	119	工曹	102
長興庫	84	濟用監	65	平市署	56
義盈庫	31	司宰監	30	兵曹	29
司瞻寺	28	別工作	26	漢城府	26
廣興倉	23	司僕寺	21	禮賓寺	20
軍資監	18	校書館	17	衛將所	15
豐儲倉	15	軍器寺	11	典設司	10
瓦署	9	春秋館	8	尙衣院	7
刑曹	7	司稟寺	6	禮曹	6
吏曹	6	典醫監	6	注書廳	6
西水庫	5	宣惠廳	5	左捕盜廳	5
觀象監	4	堂上軍職廳	4	堂下軍職廳	4
成均館	4	右捕盜廳	4	造紙署	4
惠民署	4	圖書署	3	西部	3
承文院	3	掌隸院	3	中部	3
懸房	3	弘文館	3	其人	2
內瞻寺	2	東部	2	北部	2
備邊司	2	三房	2	義禁府	2
議政府	2	一房	2	二房	2
忠勳府	2	禁衛營	1	內資寺	1
司諫院	1	御營廳	1	右巡廳	1
儀仗庫	1	掌樂院	1	典獄署	1
左巡廳	1	中樞府	1	摠戎廳	1
訓練都監	1	계		1,180	

위 표에서와 같이 甘結은 戶曹를 비롯한 70개 관아에 연 1,180건이 발급되었다. 대개 하나의 甘結이 네 곳의 관아에 전달된 셈이다. 관아별로 보면 戶曹가 279건으로 연건수로는 2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330건의 개별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 8할을 넘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는 물품의 조달과 관련해 戶曹의 협조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취대상에서 戶曹가 빠진 甘結은 대부분 인원의 동원과 관련해 兵曹나 刑曹, 漢城府, 校書館 등에 보내어진 것들이다.

戶曹 다음으로 많은 문건이 전달된 곳은 繕工監, 工曹, 長興庫, 濟用監, 平市署의 순이며, 이들 상위 6개 기관의 합이 704건으로 전체 건수의 6할을 차지한다. 이는 「純祖實錄儀軌」나 「哲宗實錄儀軌」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으로 관아 간의 순위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其人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문건을 제외하고는 「純祖實錄儀軌」나 「哲宗實錄儀軌」에서와 달리 특정한 契나 塵에 발급한 甘結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契나 塵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各司가 잘 수행했기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儀軌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발급 대상이 관아가 아니고 그 소속 인원인 것이 몇 건 보인다는 점이다. 勿禁帖의 발급과 관련해 해당 관아에 보낸 문건을 보면, 左捕盜廳과 右捕盜廳, 左巡廳, 右巡廳은 관아명만 적은 반면에 訓練都監과 禁衛營, 御營廳은 書吏를 지정해놓고 있다.¹⁴⁾ 종이를 진배하는 일의 폐단과 관련해 一房과 二房, 三房에 보낸 문건 역시 書吏를 명기해놓고 있는데,¹⁵⁾ 이러한 예는 일을 진행하는 당사자만 알면 될 일이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儀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본 儀軌에는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정한 일을 경고하는 문건이各司에 발급되고, 실제 雜物 進排人과 員役을 治罪하기 위해 刑曹와 典獄署에 笞杖을 요구

14)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辛丑 5월 10일 참조.

15)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辛丑 5월 14일 참조.

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¹⁶⁾ 『純祖實錄儀軌』나 『哲宗實錄儀軌』를 보면 물품의 진배와 관련해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笞杖을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의 일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3. 活字印刷記錄

3.1 均字匠

관아에 소속된 均字匠의 인원은 조선 초기 『經國大典』에 따르면 校書館에 40명이 있었다. 그 인원은 조선말기의 『大典會通』에서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인원이라기보다는 법전에 명기된 수치에 불과하다. 다만 『六典條例』에는 均字匠이 校書館에 7명, 觀象監에 1명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실제 인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⁷⁾

『承政院日記』를 참고하면, 仁祖 4년(1626) 7월 20일 李民庇이 均字匠의 일로 왕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내용은 校書館의 均字匠이 4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인원은 한 명도 없고, 매번 책을 인출할 때마다 私匠을 募取하니 모양이 나지 않으며, 軍政이 긴급한 때라 다른 장인은 定給하기가 어렵겠지만 均字匠이 최고로 緊關하므로 10명을 量定해서 서적의 일을 중히 하였으면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¹⁸⁾ 임란 이후 校書館에 소속된 均字匠이 전무했고, 단지 임시방편으로 私匠을 동원하여 인출의 일을 감당했던 당시 사정을 확인하게 한다.

임란 이후 지방에 거주하는 私匠을 동원한 기록은 그보다 한 해 전인 『承政院日記』 仁祖 3년(1625) 10월 21일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校書館이 平壤

16)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丙午 7월 23일 참조.

17)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한국문화』 47집(2009. 9), 78.

18) 『承政院日記』 仁祖 4년 7월 20일. 每當印書之時 募取私匠 給料使喚 以此印出之事 不成 貌樣 常患生事 極爲可慮 今當軍政緊急之日 他匠則固難定給 其中均字匠 最爲緊關 而無 一名量定 十名以重書籍之事 似不可已 而至於裁減額數之事 則更無所議.

에 移文을 보내어 均字匠을 불러 쓰고자 하였으나, 平安監司가 보낼 뜻이 없으니, 부득이 觀象監의 서적인출 때 활동한 私匠 千天男과 宋義興을 쓰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⁹⁾

仁祖 15년(1637) 6월 11일의 「承政院日記」에도 觀象監의 서적인출과 均字匠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내용은 觀象監에서 진상하는 三曆과 七政曆 등은 2월에 시작해서 冬至 전에 마쳐야 하는 役事의 기한이 있고, 일은 많이 세밀하여 매년 窘迫함을 염려하는데, 금년에는 산실된 器具를 收捨하느라 시작이 늦었는데도 戶曹에서 匠人의 料食을 裁減했으니, 가장 긴요한 均字匠은 刻字匠의 料食을 환급하여 助役하도록 해서 기한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²⁰⁾ 활자 인쇄에 있어서 均字匠의 비중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후 英祖 46년(1770) 8월 3일의 「承政院日記」에는 왕이 集慶堂에 나아가 晝講 入侍시에 唱準과 補字, 그리고 均字匠의 인원을 묻는 기사가 실려 있다. 내용은 왕이 均字匠은 몇 명인가를 물어 洪名漢이 다수임을 말하고, 왕이 다시 백여 명이 되는가를 묻자 백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²¹⁾ 인원의 범위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한 인원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本廳의 移文은 實錄의 인출에 즈음해 경향 각지에 均字匠의 동원을 위해 보낸 몇 건의 기록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당시 本廳에서는 實錄의 인출기간이 무엇보다도 均字匠의 多寡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특별히 慶尙道에 문건을 보내어 均字匠을 학습하는 사람까지도 일체 기송할 것을 주문하였으며,²²⁾ 이후 八道監營으로 하여금 각 邑만이

19) 「承政院日記」 仁祖 3년 10월 21일. 且均字匠 自前移文平壤匠人 例爲捉來使喚 而今見平安監司移文 則冬防正急守城之際 一人有關云 無意起送 不得已前日館書籍印出時 願立私匠人千天男宋義興.

20) 「承政院日記」 仁祖 15년 6월 11일. 進上三曆七政曆日譯 (中略) 役事有限 而工多細密 故每患窘迫 況今年則收捨散失器具 始役太晚 而匠人料食 戶曹亦且裁減 此非進退之役 殊甚可慮 所減中最緊者均字匠.

21) 「承政院日記」 英祖 46년 8월 3일. 上曰 均字匠幾人乎 名漢曰 均字匠則多數矣 上曰 合爲百餘人乎 名漢曰 未及百人矣.

아니라 각 寺刹에도 均字匠이라고 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수를 헤아리지 말고 널리 수소문해서 속히 올려 보내도록 주문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³⁾ 校書館에 대해 均字匠 전부를 대령토록 하는 甘結은 이후 전달되었다.²⁴⁾

그 결과 지방에서 동원된 均字匠은 당시 慶尙道에서 均字의 役을 하고 있던 校書館의 匠人 李乙丑,²⁵⁾ 宗親府에 使令으로 있는 金後種,²⁶⁾ 본시 京中의 阿峴에 거주했으나 몇 년 전 竹山으로 내려간 趙世興,²⁷⁾ 南平縣 通引 姜瑞虎²⁸⁾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당시 7, 8명에 불과하던 均字匠의 인원은 5월말에는 14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후 그 인원수는 1년 가까이 변함이 없었다. 이는 각 匠人들의 料布에 관한 여러 건의 移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²⁹⁾ 嶺南의 均字匠을 동원한 사실은 『承政院日記』에도 나와 있다. 英祖 3년(1727) 4월 1일의 기사를 보면, 嶺營의 均字匠 1명이 올라왔으므로 芸閣 匠手 2명을 本館으로 환송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³⁰⁾

『肅宗實錄儀軌』의 印役工匠에 그 이름이 기입된 均字匠은 韓興傑, 李興柱, 金尙萬, 李浚建, 趙甲辰, 黃千世, 李浚甲, 李好尙, 朴泰俊, 金浚種, 黃承起, 玄德龍, 李乙丑, 李浚榮 등 14명이다. 韓興傑은 기입순서로 보아 元老 均字匠에 해당할 것이며, 李浚建, 李浚甲, 李浚榮은 같은 집안사람일 것이다. 이는 玉冊刻手의 역할이 특정 집안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된 예를 통해서도 짐작되는 바이다.

均字匠과 더불어 봐야 할 것이 板의 수량이다. 儀軌의 印役諸具항목에는 均字板이 14장으로 나와 있고, 均字刀 역시 14개로 기입되어 있다. 이는 儀軌에 기재

22) 『肅宗實錄儀軌』 移文秩 丁未 3월 13일 慶尙道 참조.

23)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3월 15일 八道監營 참조.

24)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丁未 3월 21일 참조.

25)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3월 13일 慶尙道 참조.

26)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3월 16일 宗親府 참조.

27)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3월 16일 竹山府 참조.

28)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3월 26일 南平縣 참조.

29)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5월 30일 戶曹, 兵曹부터 戊申 3월 일까지의 戶曹, 兵曹 참조.

30) 『承政院日記』 英祖 3년 4월 1일. 嶺營均字匠一名 纔已上來 依向日筵中下教芸閣匠手二名 還送本館之意.

된 均字匠 14명의 인원수와 일치하는 것이다. 참고로 1781년에 작성된 「景宗修正實錄儀軌」에서 印役工匠의 均字匠은 孔聖麟, 林春光, 郭萬年, 孟世雲 등 4명이며, 이는 印役諸具의 均字板 4립과 均字刀 4개와 같은 수치이다.

그런데 같은 해의 「英宗實錄儀軌」를 보면, 印役工匠의 均字匠은 孔聖麟, 林春芳, 任大昌, 金致復, 郭萬年, 孟世雲, 李壽天, 李完俊, 黃雲昌, 李東喆, 高輝重, 金震哲, 金應成, 朴甲得, 朴震蕃, 黃龍得, 朴雲壽, 朴喜福, 田得俊 등 모두 19명인데, 印役諸具의 均字板은 20립이고, 均字刀는 10개로 기입되어 있다. 均字板은 均字匠의 인원보다 하나가 더 많고, 均字刀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均字匠의 동원시기 및 활동기간이 같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783년에 작성된 「國朝寶鑑監印廳儀軌」를 참고하면, 工匠秩에 均字匠으로 孔聖麟, 林春芳, 任大福, 金致復, 郭萬年, 孟世雲, 郭萬千, 金應燁 등 8명의 실명이 기입되어 있다. 그런데 實入秩에는 均字刀가 7개로 나와 있다. 비록 총 8명의 均字匠이 동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작업한 것은 7명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3.2 白土

本廳의 등록문서 중에는 금속활자를 주조할 때 쓰이는 白土에 관한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鑄型을 다양한 充填 재료로 해서 실험한 연구 성과가 있어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가 白土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낸 것은 단지 한 건에 불과하다.³¹⁾ 그런데 연구자는 白土를 소성 전에는 흑색 내지는 회색을 띄고, 소성 후에 백색으로 변하는 백자토로 정의하고 있어서 본 儀軌에서 기록하고 있는 白土와 같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本廳이 처음 京畿監營에 移文을 보내어 實錄印出 시 鑄字에 사용되는 陶罐자 靑淮에서 나는 白土 2駄와 松明 5駄를 함께 상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丁未 2월

31) 曹炯鎭, “금속활자의 白土를 이용한 밀랍주조법 실험 연구,” 『書誌學研究』 44집(2009. 12), 131.

21일의 일이었다.³²⁾ 이에 대한 監營의 회신은 같은 달 來關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일자지는 알 수 없다. 요지는 도내 각 邑에 白土가 나는 곳이 원래 없고, 靑淮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며, 松明의 요구는 과다해 민폐라는 것이었다. 해당 문건에 병기한 本廳의 處分은 비교적 長文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名은 謄錄에 근거한 것으로 書吏와 匠人에게 수소문해서 그 곳을 밝혀 알려 주겠는데, 긴급한 都監의 일을 며칠 뒤에 이렇게 牒報를 올리는 식으로 처리하면 해당 書吏는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生死의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 地名은 匠人에게 물어본바 衿川縣이다.³³⁾

이후 같은 달 어느 날의 京畿監營 첨부 衿川縣監 문건에는 25일까지 掘取해서 상납하겠는데, 다만 白土를 여러 해 掘取해서 20餘尺의 깊이가 되고 土脈이 더 미세해졌으며, 軍丁을 調發하고 督掘하긴 하지만 날이 추워서 지체할 것 같아 염려되어 미리 牒報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³⁴⁾ 한편 土脈이 약해진 이유가 白土를 양반 집안에서 房舍의 귀퉁이[隅]에 鑿入한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해당지역의 오랜 民家를 조사하면 확인이 어렵지만은 않겠다.

3.3 松烟墨

儀軌에 등록된 本廳의 문건으로 활자인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의 하나는 바로 墨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헌인 實錄의 인출에 필요한 것이어서 墨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였고, 또 그 양이 적지 않아 墨의 수급에 관한 문건이 儀軌에 다수 등록되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다른 실록의례에 비해 「肅宗實錄儀軌」는 墨에 관한 기술이 보다 자세하다.

本廳이 校書館 등에 甘結을 보내어 墨을 진배토록 한 것은 丁未 2월 18일의 일이다. 그 내용은 纂修가 끝나고 1邊 인출하는데 소용되는 松烟墨을 20斤 진배 하라는 것이었다.³⁵⁾ 그런데 이후 진배한 松烟墨이 오래되어 淡濁이 正本 인출에

32)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移文秩 丁未 2월 21일 京畿監營 참조.

33)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丁未 2월 일 京畿觀察使 참조.

34)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來關秩 丁未 2월 일 京畿監營 참조.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13斤 7兩 6錢 5分을 돌려보내고 새로 만든 것으로 바꾸어 진배하라는 문건,³⁶⁾ 그리고 松烟墨 10근을 포함해서 實錄 인출 시 들어가는 잠물 중에 거의 다 써가는 것을 진배하라는 문건,³⁷⁾ 곧 이어서 또 다시 부족한 물종을 松烟墨 10근을 포함해 진배하라는 문건,³⁸⁾ 實錄에 빠진 것을 보충해 인출하면서 거기에 소용되는 松烟墨 4근 등을 진배하라는 문건³⁹⁾ 등 다수가 본 儀軌에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모든 문건에서 그 墨의 종류를 松烟墨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松烟墨은 목판이나 목활자에 쓰이고, 금속활자에는 油烟墨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러했는지는 油烟墨과 松烟墨의 粘度와 紙質에 관해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⁴⁰⁾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油烟墨과 松烟墨을 각각 금속활자판과 목판에 적용한 결과 紙質과 墨의 粘度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며, 墨의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松烟墨은 紙質이 어느 정도 적절한 두께를 유지할수록 좋고, 油烟墨은 얇을수록 좋다는 것이 실험적 연구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肅宗實錄」 인출 시 松烟墨을 사용한 사실을 두고 굳이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結語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本廳文書는 모두 530건이며, 그 중 移文이 152건,

35)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丁未 2월 18일 校書館 등 참조.

36)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丁未 윤3월 15일 工曹, 戶曹 참조.

37)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丁未 6월 1일 戶曹, 工曹 등 참조.

38)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丁未 7월 12일 戶曹, 校書館 등 참조.

39)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戊申 3월 3일 戶曹, 工曹 참조.

40) 朴文烈, “印出用 油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40집(2008. 9), 5-45.; 朴文烈, “印出用 松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42집(2009. 6), 227-266.

來關이 48건, 甘結이 330건이다. 이들 문건을 중심으로 문서등록의 특징과 활자 인쇄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本廳文書 중에는 儀軌 작성 시 문서원본의 부재나 훼손으로 해당 문건의 기입을 아예 생략하기도 하였으며, 원문이 누락된 문건이나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문건도 儀軌에 다수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儀軌 작성 시 오류로 날짜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명백한 誤字도 눈에 띈다. 그것이 비록 예민한 사안은 아니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정도는 아니지만, 등록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둘째, 本廳이 수취한 來關의 등록은 특별히 해당 관아가 實錄廳의 주문에 호응하지 못한 문건에 한정하였고, 이 때 來關 아래에 堂上의 題辭를 병기하여 후일의 증빙으로 삼았다. 『純宗實錄儀軌』와 『哲宗實錄儀軌』에 등록된 來關은 주로 중요한 물품의 진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肅宗實錄儀軌』에 등록된 本廳의 甘結은 『純祖實錄儀軌』나 『哲宗實錄儀軌』와 달리 契와 塵에 발급한 것이 없고, 관아가 아니라 소속 인원을 그 대상으로 勿禁帖 및 종이진배의 폐단에 관한 문건을 발급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넷째, 本廳은 實錄의 인출기간이 均字匠의 多寡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寺刹의 均字匠 뿐 아니라 지방에서 均字匠의 일을 학습하는 사람까지 일체 起送할 것을 주문하였고, 校書館의 均字匠 진부를 대령토록 하였다. 14명에 달한 均字匠의 인원 가운데에서 韓興傑이 그 중 원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本廳의 등록문서에는 鑄字에 소용되는 陶罐차 京畿監營에 衿川縣 靑淮에서 나는 白土 2駄를 올려 보내도록 하고, 白土의 土脈이 약해진 것은 양반 집에서 房舍의 귀퉁이[隅]에 이를 鑿入해서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本廳의 등록문서에는 松烟墨을 여러 차례 진배토록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진배한 松烟墨은 오래되어 淡濁이 正本의 인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還下하였으며, 새로 만든 것으로 바꾸어 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金屬活字印出에 松烟墨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라 하겠다.

<참고문헌>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1982.
-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 「英宗大王實錄廳儀軌」.
- 김상호.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9집 (2011. 9). 335-357.
- 김상호. “純宗大王實錄儀軌 謄錄 官文書의 研究.” 『書誌學研究』 50집(2011. 12). 231-248.
- 朴文烈. “印出用 油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40집 (2008. 9). 5-45.
- 朴文烈. “印出用 松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42집 (2009. 6). 227-266.
-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한국문화』 47집(2009. 9). 71-94.
- 曹炯鎭. “금속활자의 白土를 이용한 밀랍주조법 실험 연구.” 『書誌學研究』 44집 (2009. 12). 119-160.

